입법평가 회의자료집 ⑧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2010. 3. 19.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전문가회의 일정

목 적 :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수행과제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 방법론 및 연구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일 시 : 2010. 3. 19(금) 10:00 ~ 13: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참석자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이 영 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원외
최 윤 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허 성 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 상 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은 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 성 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 종 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원내
이 준 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준 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원외 6인, 원내 10인, 총 16인		

회의내용

- 연구계획 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연구배경 설명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자문 등
  · 토양환경보전법의 현재 쟁점
  · 연구방법론 정립(정성평가 및 계량분석 부분)
  · 연구의 유의점 등

전문가회의 일정

목 차

▣

▣ 연구계획서안:『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7

자료 1 : 초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

▣ 비시장가치평가법과 그 적용 (최성록) ····· 15

자료 2 : 토양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평가 방법론

▣ 토양의 경제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석) ····· 27

▣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 ····· 125

▣ 연구과제명(2010년)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연구제안자

입법평가연구센터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환경관련 법제들은 대부분 규제를 중심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목적이 국가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차후 연차별로 주요 환경분야인 대기, 수질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법제에 적용가능한 입법평가 모델을 정립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입법평가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2010년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

따라서 주요 환경관련 법률의 하나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하여 각종 평가기준과 분석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토양환경보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토양환경평가 -연구자(년도): 채영근(2008) -연구목적: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환경평가의 실효성 확보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소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방안 제시 -오염부지 양수도와 토양환경평가 관련 판례분석
주요 선행 연구	2	-과제명: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브라운필드 문제 -연구자(년도): 김홍균(2009) -연구목적: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경험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관련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	-미국의 브라운필드 문제 관련 법 소개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에의 시사점 도출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 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주로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다양한 입법평가 방법론을 통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연구 -법령체계분석 등 규범분석 -비교법 연구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비용편익/비용효과분석 -전문가조사 등 실태조사 -비시장가치계량화 관련 설문조사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성 확보 -비시장가치인 토양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 제안

▣ 주요 연구내용

□

정성적 평가

- 합헌성을 포함하는 체계정합성 평가
- 법률의 명확성, 이해가능성
-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도 및 복종도 조사

□

- 비교법적 연구

계량적 평가

- 비용 편익분석
- 확장비용편익분석
- 표준비용모델 적용 분석

□

- 조건부 가치평가법
- 대체비용법/복원비용법 등 계량적 분석 적용 분석

□ 전문가 조사 등 실태조사

- 토양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
- 토양정화기준의 합리화 등

▣ 연구추진방법

□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 제시

□

□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2010.1-2010.6)

전문가회의(2010. 7)

워크숍개최(2010. 8)

▣ 기대효과

- 토양환경보전법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 법률 비용과 결과(효과) 분석에서 사용되어 오던 분석 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환경조성과 관련한 비용·편익 분석,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표준비용 모델 적용, 환경오염 및 배상 등과 관련하여 조건부 가치평가법 등 환경가치 추정 기법의 적용 등 다양한 평가기준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함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학계 및 기타 유관기관 전문가와 공동연구 수행 예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자문위원단>

성 명	소속(직위/전공)
이영채	환경부(사무관/토양지하수과)
한상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법학)
안소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조정팀장/경제학)
허성욱	서울대학교(법과대학 교수/법경제학)
최윤철	건국대학교(법과대학 교수/법학)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토양생태학)

성 명	소속(직위/전공)
최성록	강원발전연구원(연구위원/환경경제학)
최미희	국회 예산정책처(산업사업평가팀장/경제학)
홍준형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행정법)
김홍석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 교수/지역경제학)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기관: 위원 중 원외 4인의 공동연구진 구성 예정임)

□

2010.1.-2010.10 (10개월)

구 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연구 수행 계획					
▌정성적 평가 :					
1. 관련 법령의 체계성분석 및 검토					
2. 비교법적 연구					
3. 규범의 수용도, 효과성 평가					

구 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계량적 평가 :					
1. 비용편익/비용효과분석					
2. 표준비용모델 적용 연구					
3. 조건부가치평가법 적용 연구					
4. 종합검토					
▌환경분야에 대한 입법평가모델 제시					
	○	○	○	○	○
전문가 자문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		○	
기 타					
국외출장					
연구심의회					

- 2월 17일 (목) 1차 자문회의 : 연구과제의 범위 확인 및 공동연구자 구성 논의
- 3월 19일 (금) 2차 자문회의 : 연구 방법론 정립 및 공동연구진 확정
- 5월 13일 (목) 1차 워크숍 : 비시장가치 측정을 위한 설문구성 및 연구 진행 점검회의

- 7월 15일 (목) 2차 워크숍 : 규범분석 관련 중간점검 및 경제분석 관련 검토 워크숍
- 9월 16일 (목) 3차 자문회의 : 입법대안 비교분석을 위한 자문회의
- 10월 28일 (목) 최종심의회 : 최종심의회

자료 1 : 초이스 모델링에 대한 설명

비시장가치평가법과 그 적용

최성록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자문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서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재정리한 것이다. 구성은 연구방법과 사례연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공공재와 비시장가치평가

토양환경보전법을 포함하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혹은 목적)는 불특정다수인의 국민 일반에게 더 나은 환경의 질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로 간주할 수 있겠다. 공공재는 잠재 수혜자(사용자)를 차별하지 않고(nonexcludability) 그 사용이 소모적이지 않기 때문에(nonrivalry)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재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가격'이라는 거래 균형점이 없다고 하겠다. 즉,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효용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후생변화를 추정하는 특별한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비시장가치평가법(nonmarket valuation) 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비시장가치평가법은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CVM)과 초이스모델링(혹은 선택실험)이 주로 사용된다. 진술선호법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대상재의 가치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상시장을 형성하여 비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진술선호법이 추정하는 비시장가치는 총경제가치(Total Economic Value)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활동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용가치만이 아니라 교육적이거나 이타적인 목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비사용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림 1> 비시장가치평가법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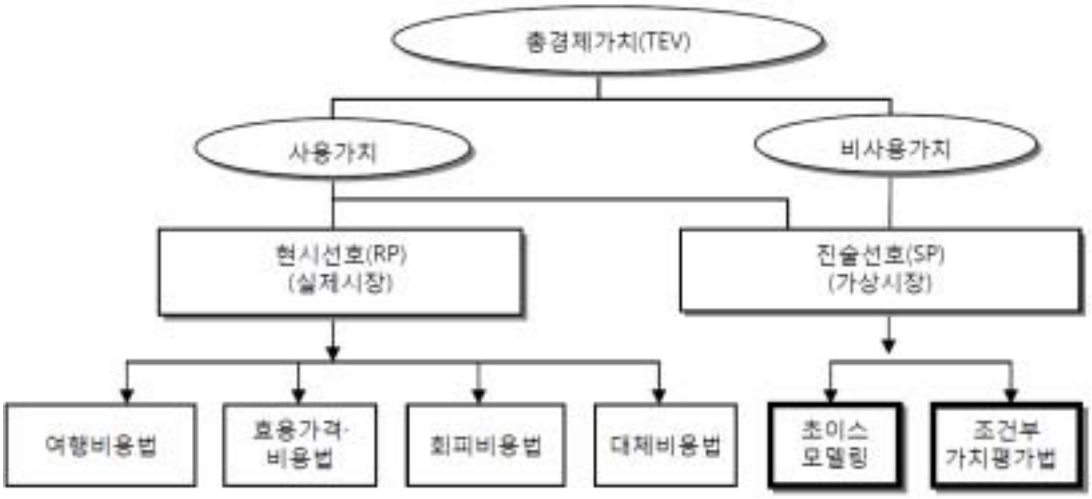

출처: Bateman et al. (2002:30)의 Figure 1.4를 저자가 수정.

진술선호법의 적용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1989년에 알레스카 인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유조선(Exxon Valdez)의 해양사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방법론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Kenneth Arrow and Robert Solow가 좌장을 맡았던 전문가패널(Blue-ribbon panel)은 CVM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권고지침을 발표하였다(Arrow et al.,

1993).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CVM 뿐만 아니라 진술선호법의 모든 세부기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Venkatachalam, 2004:90-117; Bateman et al., 2002:296-342). 이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연구에서 설정된 상황이 현실이 아닌 가상적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신의 실제 선호도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축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가상편의 혹은 전략편의; strategic bais). 둘째로, 평가 대상이 되는 자원 혹은 재화가 다른 여러 가지 자원들로 구성된 복합재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단독으로 평가되었는지에 따라서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포함효과 혹은 범위효과; scoping effect). 셋째로, 설문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응답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전달되었는지의 차이도 중요하다(정보효과 혹은 구성효과; framing effect). 더불어, 응답자에게 주어진 지불금액이 낮거나 혹은 높은지(시작점편의; starting point bias), 응답자들의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yea-saying), 지불수단의 영향(payment vehicle bias)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진술선호법으로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초이스모델링이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제한된 상황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직접 진술하게 하거나 주어진 지불의사액에 대한 허용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초이스모델링은 대상자원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다속성)로 설명하며, 이들이 동시에 변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댐건설 관련 생태가치 추정, 한강 하구 가치 추정, 한탄강 휴양가치 추정 등에 초이스모델링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였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98개의 연구논문에 총 255개의 추정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이진권 · 임영아, 2007). 표 1은 연구 분야와 추정 사례 건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질

과 대기, 산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적용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2007년까지 국내에서 적용되었던 조건부가치평가법 연구 사례

환경자원 분야	조건부가치평가법 사례(추정결과 수)
생태계/생물종	27
습지/사구	9
국립 및 도립공원	35
산림자원	50
수자원	31
경관	14
수질	47
. 대기	44
폐기물/퇴비	4
계	255

* 출처: 이진권 임영아(2007).

반대로 초이스모델링의 경우는 2000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2007년까지 총 11건의 국문학술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표 2에는 개별 연구 분야와 사용된 속성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비시장가치평가법으로서 초이스모델링의 국내 적용 사례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 응용 과정에서 복잡한 실험설계를 거치고 분석과 해석에 대한 어려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같은 시간에 국제 학술저널에 실렸던 초이스모델링의 사례는 환경, 자원, 관광, 보건, 교통, 문화 등에서 가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연구가 조건부가치평가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다.

표 2. 2007년까지 국내에서 적용되었던 초이스모델링 연구 사례

연구 분야	사용된 속성 리스트
1. 가축배설물 퇴비화(홋카이도)	소재의 종류, 운반의 가부, 톤당 가격
2. 대기오염영향(서울)	사망위험, 질병위험, 먼지피해, 시정거리피해, 가격
3. 논경지 개발 방향(남해)	다랭이 논의 녹지경관, 교육프로그램, 재해방지나 국토보전, 지불의사액
4. 댐건설 환경영향(전국)	산림, 동물종, 식물종, 문화유적지 및 유물, 가격
5. 계층구조변화(제주도)	행정처리 속도, 지역갈등 건수, 지역의 고유성, 유권자당 대표자 수, 5년간. 세금
6. 청계천 생태복원(서울)	하천형태, 수질, 수변공간
7. 한강하구(수도권)	수산자원산란 및 서식지 기능, 조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기능, 수질정화 기능, 심미적 문화적 기능
8. 박물관 시설물(5개 대도시)	박물관 연면적, 유물의 종류, 유물의 질, 접근 용이성, 전시 외 주요 프로그램, 추가적인 가구 당 소득세
9. 댐호수 휴양가치(전국)	호수규모, 수질, 거주지로부터의 소요시간, 혼잡도, 유람선, 낚시, 차량진입, 주변관광지, 전시관, 강변 숙박시설, 강변 음식점
10. 안양천(수도권)	홍수피해위험, 유지유량, 수질, 하천형태, 안양천 개선 분담금
11. 확률적 인간생명가치(전국)	사망원인, 자발성, 사망시점, 사망률 감소량

2. 초이스모델링 소개

초이스모델링은 조건부가치평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계적 설계를 통해 선택모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방법은 Louviere and Hensher (1982) and Louviere and Woodworth (1983)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s)이라고도 불린다. 초이스모델링이 비시장가치평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마케팅과 교통, 관광,

문화, 보건,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Morley, 1994; Correia et al., 2007; Lindberg et al., 1999; Hanley et al., 1998; Hensher and Greene, 2003; Morey and Rossmann, 2003; Rolfe and Bennett, 1996; Adamowicz et al., 1998; Choi et al., 2009).

초이스모델링은 Lancaster(1966)의 가치특성이론(the characteristic theory of value)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자원을 제한된 수의(4개~8개) 속성으로 구분한 다음, 각 속성별 변화를 바탕으로 선택의 대안이 되는 다양한 상황을 제공한다.[1] 이러한 선택상황(선택조합)은 속성변수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경향을 통계적 실험설계를 통해서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각각 상이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초이스모델링 응답자들은 '초이스셋'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선택질문에 대답하게 된다. 각각의 선택질문에서는 몇 개의 선택대안이 주어지고 응답자는, 가장 선호하는 것을 고르도록 요청받는다. 이들 선택대안들 중에 하나는 현재 상황 혹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초이스셋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의 하나는 화폐 혹은 비용을 나타내는 속성(화폐속성)이 포함되어 지불의사액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주어진 선택상황에서 응답자들은 보통 3개의 선택대안을 접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것을 골라야 한다. <그림 2>은 선택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6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대안들을 비교하여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하나의 설문지에서 이와 같은 선택상황을 4개~8개까지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문결과는 코딩 과정을 거쳐 특정 통계프로그램(Nlogit)으로 분석하게 된다. 선택함

1) 초이스모델링에서 특정 상품은 몇 가지 구성 속성들과 그 속성의 수준으로 해석하여 가치 혹은 효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열대우림의 보전정책은 그 장소(국가), 면적, 희소성, 방문 가능성,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파급효과, 지역적 특성, 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Rolfe and Bennett, 2001). 또한, 잔여 식생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가치는 종의 희귀성, 방문 편의성, 면적, 가구당 비용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Morrison et al., 1996).

수는 확률효용모형(RUM)으로 설명되는데, 다속성로짓(MNL)이나 혼합로짓(ML) 등으로 파라미터 값을 추정한다.

<그림 2> 선택질문(초이스셋)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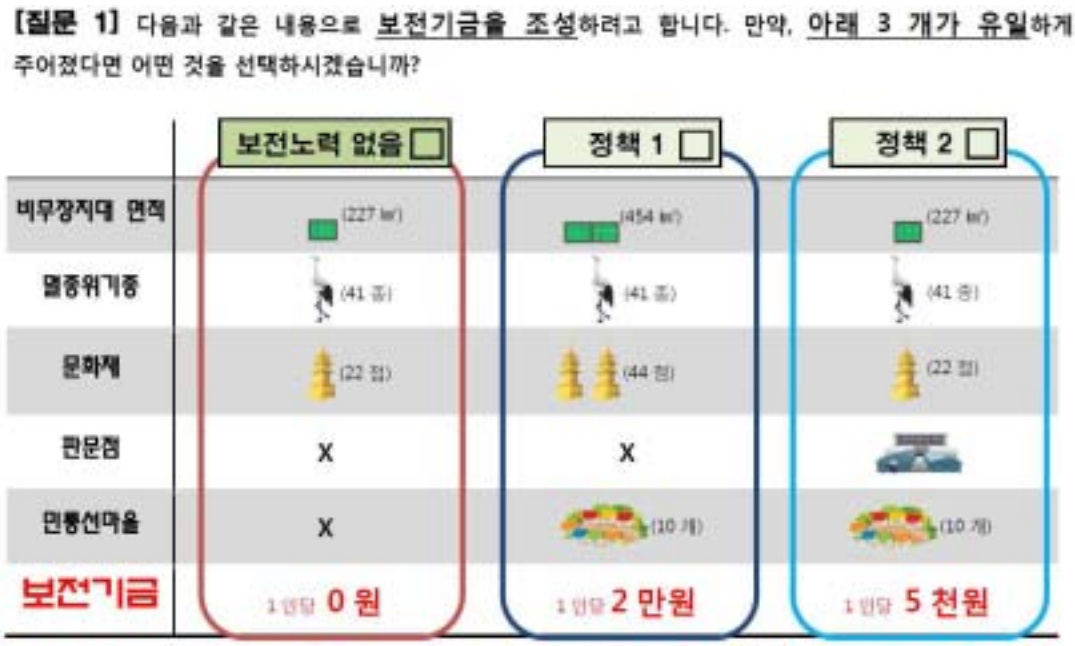

초이스모델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장 가격형성에 가장 유사한 진술선호법으로 개인의 선호도를 선택을 통해 표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선택행동을 통계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근거하여 환경경제, 자원경제, 문화, 관광, 교통, 보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주류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DMZ일원의 자원들은 생태환경자원, 문화자원, 전적자원 등 여러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은 속성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속성별 한계가치를 추정하고 특정 정책변화에 대한 보상잉여를 추정하는 것은 조건부가치평가법 보다는 초이스모델링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셋째, 속성의 수준변화를 통계적 실험설계를 통해 구축하여 상호교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종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지불의사액을 전면에 내세워 허용여부를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선택상황에서 주요 속성들 사이의 변화에 대한 선택확률 변화를 추정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편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3. 제안된 과제의 사례연구 관련

제안된 연구계획서에는 비시장가치를 계량화하는 사례연구가 언급되어있다. 특히, 토양정화를 통해 개선되는 생태계 서비스 및 향상된 토양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연구 사례의 특성에 대한 구분이 없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반면, 관련 설문을 준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가. 비시장가치평가의 대상과 그 목적에 대한 추가 고려: 계량적평가의 사례지역과 그 평가대상(복원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전체 연구목적을 고려한 비시장가치평가 목적(관계)을 명확히 정의

나. 세부 방법론의 선정: 단일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건부가치평가법과 다속성을 대상으로 보상잉여를 추정하는 초이스모델링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택

다. 설문 표본의 크기와 그 범위: 연구 목적에 따라 표본은 전국표본, 관련 지역표본, 수도권(혹은 인근 광역시) 등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라. 설문지의 준비와 수거: 주어진 방법론에 따라 편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접근법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수거

이러한 세부 고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외부 조건에는 사례조사 연구비 규모와 기간의 문제가 있다. 특히, 초이스모델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진권 임영아,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체계 구축 I(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 검증 및 개선방안), 2007, 환경정책평가연구원.

Arrow, K., Solow, R., Portney, P. R., Leamer, E. E., Radner, R. and Schuman, H.,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Federal Register, Vol. 58(10), 1993, pp. 4601-4614.

Bader, G. E. and Rossi, C. A., Focus Groups: a step-by-step guide: The Bader Group, 2002.

Bateman, I. J., Carson, R. T., Day, B., Hanemann, M., Hanley, N., Hett, T., Jones-Lee, M., Loomes, G., Mourato, S., Ozemiroglu, E., Pearce, D. W., Sugden, R. and Swanson, J., Economic Valuation with Stated Preference Techniques: a manual. Northampton, MA: Edward Elgar, 2002.

Choi, A. S., Ritchie, B. W., Papandrea, F. and Bennett, J., "Economic 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a choice modeling approach." Tourism Management, Vol. 31, 2010, pp. 213-220.

Correia, A., Santos, C. M. and Barros, C. P., "Tourism in Latin America: a choice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4(3), 2007, pp. 610-629.

Hanley, N., Wright, R. E. and Adamowicz, W., "Using choice experiments to value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11, 1998, pp. 413-428.

Hensher, D. A. and Greene, W. H., "The mixed logit model: the state of practic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Vol. 30(2), 2003, pp. 133-176.

Hensher, D. A., Rose, J. M. and Greene, W. H., Applied Choice Analysis: a prim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Lancaster, K. J., "A new approach to consumer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1966, pp. 132-157.

Lee, C.-K. and Mjelde, J. W., "Valuation of ecotourism resources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case of the Korean DMZ." Ecological Economics, Vol. 63, 2007, pp. 511-520.

Lindberg, K., Dellaert, B. G. C. and Romer Rassing, C., "Resident tradeoffs: a choice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6(3), 1999, pp. 554-569.

Louviere, J. J., "Choice experiment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issues." In J. Bennett and R. Blamey (eds.), The Choice Modelling Approach to Environmental Valuation, 2001, pp. 13-36.

Louviere, J. J. and Hensher, D. A., "On the design and analysis of simulated choice or allocation experiments in travel choice modelling."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 890, 1982, pp. 11-17.

Louviere, J. J., Hensher, D. A. and Swait, J. D., Stated Choice Methods: analysi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Louviere, J. J. and Woodworth, G., “Design and analysis of simulated consumer choice and allocation experiments: a method based on aggregate data.”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0, 1983, pp. 350-367.

McFadden, D.,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Z. P. (ed.),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McFadden, D., “Economic Cho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3), 2001, pp. 351-378.

McFadden, D. and Train, K., “Mixed MNL models for discrete response.”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15, 2000, pp. 447-470.

Morey, E. R. and Rossmann, K., “Using stated-preference questions to investigate variations in willingness to pay for preserving marble monuments: classic heterogeneity, random parameters, and mixture model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27(3/4), 2003, pp. 215-229.

Morley, C., “Experimental destination choice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1(4), 1994, pp. 780-791.

Morrison, M., Bennett, J. W. and Louviere, J. J., A comparison of stated preference techniques for estimating environmental values. Choice Modelling Research Report No.1. Canberra: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996.

Morrison, M. D., Bennett, J. W. and Blamey, R. K., Designing choice modelling surveys using focus groups: results from the Mac-

quarie Marshes and Gwydir wetlands case studies. Choice Modelling Research Report No. 5. Canberra: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997.

Rolfe, J. and Bennett, J., Valuing international rainforests: a choice modelling approach, Canberra: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996.

Rolfe, J. and Bennett, J., "Framing effects." In J. Bennett and R. Blamey (eds.), The Choice Modelling Approach to Environmental Valuation, 2001, pp. 202-224.

Rolfe, J., Bennett, J. and Louviere, J., "Stated values and reminders of substitute goods: testing for framing effects with Choice Modelling."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46(1), 2002, pp. 1-20.

Rose, J. M. and Bliemer, M. C. J., Constructing Efficient Choice Experiments. ITLS Working Paper ITLS-WP-05-07. Sydney: University of Sydney, 2005.

Train, K. E.,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Venkatachalam, L.,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 revie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 24(1), 2004, pp. 89-124.

자료 2 : 토양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평가 방법론

토양의 경제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석 (서울대학교 교수)

▣

○

○ 연구배경 및 목적

○ 토양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 활동의 결과로 토양오염이 더욱 심화

○

○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의 생존 터전인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

○ 토양오염은 그 영향이 오랜 시간을 두고 큰 위해성을 내포

▷ 토양오염은 현세대의 문제 일 뿐 아니라 후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

▷ 1970년대 이후 농업 및 산업개발에 의하여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 폐수, 분진, 농약 등의 토양오염

▷ 물질의 배출이 증가

○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토양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2008-2017)’ 계획 등

토양의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제도들에 대한 개선이 활발히 진행

여러 경제적, 정치적 현안들에 의해 장기적인 목표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

○ 토양이 가지는 경제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토양의 가치를 화폐화하고 가치를 객관화하여, 향후 토양 관련 사업의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사례에 유용하게 사용가능(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역 개발사업 등의 오염사례)

▣ 연구방법

▷ 토양의 가치

▪ 사용가치부분

▷ 토양의 기능 및 서비스별 간접가치 산출

▪ 기능별 대체비용법으로 가치 산출

▪ 비사용가치

존재 및 유산가치에 대한 가상상황을 제시하여 가치를 산출

조건부가치측정법: 단일양분선택 또는 이중양분선택 질문법을 활용

그림 4 토양의 가치

○ 토양오염에 대한 손실가치

▷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기능의 손실에 대한 피해비용을 산출하여 손실가치로 환산

▷ 토양오염에 따른 존재 및 유산가치의 효용감소에 따른 가치 변화를 산출하여 오염의 경제적 피해를 측정

▷ 토양오염 전후의 가치변화를 통해 토양오염 방지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연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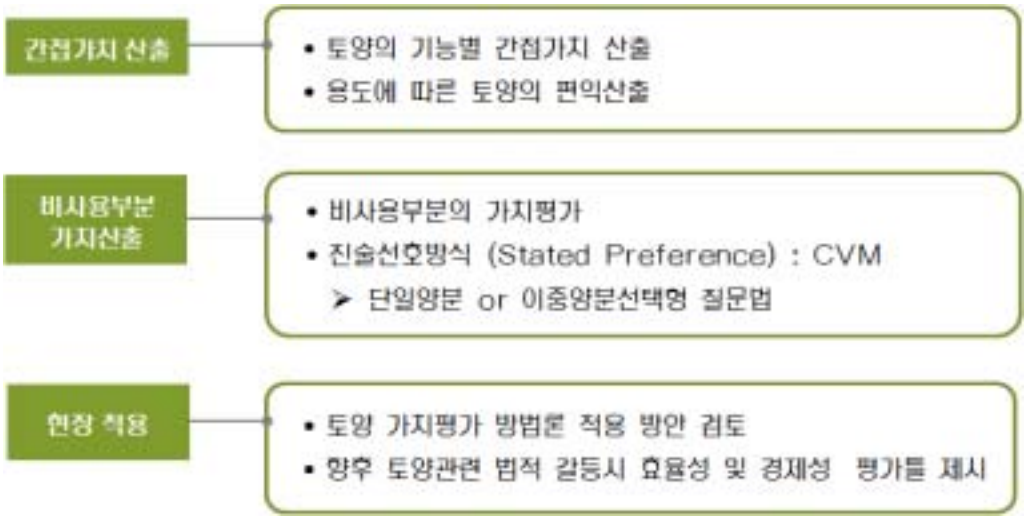

그림 5 연구체계

자료 3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2월 정부제출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7707

제출연월일 : 2010. 2. 2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어 오염토양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안 제6조의2 신설)

1) 표토는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1)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국유재산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를 할 수 없는 오염토양 등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여 토양오염이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1)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토양정화업자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5)

1) 현재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만 위해성평가를 하여 이를 토양정화의 범위 및 시기 등에 반영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를 하는 경우에도 위해성평가기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토양관리단지의 지정(안 제15조의7 신설)

1)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토양관리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법률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③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④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①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제 5 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④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및 폐기물을 성토재(盛土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한 지역 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환경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 6 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 6 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에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오염원인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 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②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및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

② 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 돌 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

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제9조(손실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④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제10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②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③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 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 ·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 · 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장에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의5(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제10조의6(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5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7(「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①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 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 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

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
③ 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
⑤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
⑥ 야 한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

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 ·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⑥

⑦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① . .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오염원인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오염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①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

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
③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
④ 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② 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
③ 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 시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
② 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③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④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 ·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1조(행위제한)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 ·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 감독

② 2.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3.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4.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③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①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②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

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

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23조의12(권리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②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③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2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

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장 벌 칙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제30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부실하게 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總 則	제1장 총 칙
第1條(目的) 이 法은 土壤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土壤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土壤이 汚染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狀態를 말한다. 2. "土壤汚染物質"이라 함은 土壤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土壤汚染物質을 生産 運搬 貯藏 取扱 加工 또는 처리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 裝置 建物 構築物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構築物)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현 행	개 정 안
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또는 물리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라 함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7.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①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第 3 條(적용 제외) 이 法은 放射性物質에 의한 土壤汚染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적용 제외)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 4 條(土壤保全基本計劃의 수립등) 環境部長官은 土壤保全을 위하	제 4 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

현 행	개 정 안
여 10年마다 土壤保全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②	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土壤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2. 土壤汚染의 現況 進行狀況 및 將來豫測 3. 土壤汚染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신 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④ 5. 기타 土壤保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④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域土壤保全計劃(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地域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 행	개 정 안
⑤ 基本計劃 및 地域計劃의 수립 방법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①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①환경부령으로 정한다.
第 5 條(土壤汚染度 測定 등) 環境部長官은 전국적인 土壤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土壤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제 5 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 행 ③	개 정 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및

현 행	개 정 안
	폐기물을 성토재(盛土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한 지역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의 결과는 이를 公開하여야① 한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① 한다.
第 6 條(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 告示) 環境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 區域 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이를 告示하고, 누구든지 그 圖面을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測定網 設置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①	제 6 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환경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 6 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현 행	개 정 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 6 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에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오염원인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①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 7 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__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제 7 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__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현 행	개 정 안
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 設置區域의 土地 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구역의 토지 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신 설>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 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 8 條(他人土地에의 出入 등)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의 규	제 8 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현 행	개 정 안
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 돌 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및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 돌 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障碍物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同意를 얻어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出入할 날 또는 障碍物을 변경 제거할 날의 3日전까지 그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현 행	개 정 안
④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및 居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⑤ 日出전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⑥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出入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第 9 條(損失補償)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제 9 조(손실보상)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 시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현 행	개 정 안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③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 ④ 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請求人에 ④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 ⑤ 을 입은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⑤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①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①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양수하거나 임대 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 양수(제10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

현 행	개 정 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대 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
②	②
③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토양환경평가의 항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토양환경평가의 항목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土壤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 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 행 ②	개 정 안
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者가 連帶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 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 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한 환가, 國稅徵收法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다.「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신 설>	**제10조의4(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제10조의5(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현 행	①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6(분담금)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5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7(「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2章 土壤汚染의 規制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 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 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현 행	개 정 안
원인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特定土壤汚染管理對象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구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현 행	개 정 안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設置에 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設置者(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① 바에 따라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제13조(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

현 행	개 정 안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 다수의 저장시설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

현 행	개 정 안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⑥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

현 행	개 정 안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 **<신 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② 명할 수 있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② 명할 수 있다.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⑤ 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 제

현 행	개 정 안
또는 사용중지 ④·⑤ 오염토양의 정화 ⑥ 삭 제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 행 ①	개 정 안 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유출하는 행위 **<신 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를 하고자 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오염원인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현 행	개 정 안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 설>	②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오염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신 설>	③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현 행	개 정 안
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에 의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적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②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⑤
<신 설>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현 행	개 정 안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第 3 章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및 관리	제 3 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第16條(土壤汚染對策基準) 憂慮基準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財産과 動 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주어서 土壤汚染에 대한 對策을 필요로 하는 土壤汚染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第17條(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 環境部長官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할 市 道知事와 협의하여 土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②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②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管轄區域 중 특히 土壤保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地域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對策地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의 지정기준 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策地域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 位置 면적 指定年月日 指定目的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18條(對策計劃의 수립 施行) **시장 군수 구청장[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은 對策地域에 대하여는 土壤保全對策을 위한 計劃(이하 "對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 시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對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汚染土壤改善事業 2. 土地등의 利用方案 2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신 설>** 3. 기타 당해 對策計劃의 수립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현 행	개 정 안
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종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④
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하며, 對策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①시행결과의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①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9條(汚染土壤改善事業) **시장 군수 구청장**은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原因者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土壤改善事業計劃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③
第1項의 경우에 그 汚染原因者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原因者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④	④
第3項의 경우에 당해 對策地域이 2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汚染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현 행	개 정 안
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技術不足, 事業費過多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技術的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0條(土地利用등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①되는 土地의 이용 또는 施設의 設置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②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①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第21條(행위제한) (생 략)	제21조(행위제한)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③고 인정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③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 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土壤이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다①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行爲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에게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등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①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第22條(對策地域의 指定解除) 環境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에 의하여 지정된 對策地域이 對策計劃의 수립 施行으로 土壤汚染의 정도가 **憂慮基準** 이내로 개선되었거나 公益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天災 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對策地域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解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第17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 지정의 解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삭 제>**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현 행	개 정 안
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 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신 설>**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 감독 2.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3.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② **<신 설>**	② **4.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 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③ 된 것으로 본다.	③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현 행	개 정 안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

현 행	개 정 안
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 ①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①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②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현 행	개 정 안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③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 때	③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현 행	개 정 안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5.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

현 행	개 정 안
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①	①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②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3의 규정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①	①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하는 때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③ 3.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 ③ 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 ④ ①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수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의12(권리 의무의 승계)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	제23조의12(권리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현 행	개 정 안
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①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⑪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②기술인력 교육)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

현 행	개 정 안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第4章 補 則	제4장 보 칙
第24條(代執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 實施命令 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第25條(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

현 행	개. 정 안
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 道知事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土壤汚染防止를 위한 客土등 農土培養事業 2. 廢鑛地域의 鑛物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鑛山公害防止對策 3. 産業施設등의 設置로 인하여 훼손된 土壤의 復舊 4. 기타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26條(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가 추진하는 土壤保全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

현 행	개 정 안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조사결과 내역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

현 행	개 정 안
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第27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 5 章 罰 則	제 5 장 벌 칙
第28條(罰則)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實施命令을 받고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현 행	개 정 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4.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린**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7.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7.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부실하게 한 자**
<신 설>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

현 행	개 정 안
.	**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7.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현 행	개 정 안
8. 제15조의4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9.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아니한 자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 표토의 침식 현황조사(안 제6조의2 신설)

○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토양관리단지의 조성(안 제15조의7 신설)

○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3. 미첨부 사유

표토의 침식 현황조사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토양침식으로 인한 환경영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 - 토양침식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범위 등이 설정되어야 비용추계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는 국유재산 사용으로 발생된 오염토양이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환경부가 오염토양 정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의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화할 대상이 선정되어야 정확한 비용추계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토양관리단지의 경우 환경부가 관리청인 토지를 지정하여 민간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부지는 환경부 소관·국유재산을 활용하고, 민간 토양정화업자 입주하여 정화시설을 설치 운양할 계획이며,
- 동 단지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이 수반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추정이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환경사무관 이영채(02-2110-6772)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10년 3월 19일 오전 10시-12시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참석자 : 이순태, 윤광진, 차현숙, 윤석진, 윤계형, 박은진, 한상운, 허성욱, 최윤철, 이영채, 최성록, 이준서, 현준원, 박종원, 배건이

차현숙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제가 연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오신 자문위원들께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채사무관님께서 국회에 계류중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쟁점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후 회의가 있으셔서 먼저 가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대표적인 환경분야 관련된 가치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들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에는 대표적인 환경법률연구를 통해서 환경에 관련된 가치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입법평가에 대해서 법률이나 법안이 가지는 사전예측효과 및 사후 영향을 예측하여 입법자가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입법평가입니다. 오늘은 연구계획은 진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을 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채사무관님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영채

2006년도에 개정안 작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입법예고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환경관련 범위 자체가 그 관리대상인지, 이로 인한 오염인지가 문제시 됩니다. 특히 표토의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고려를 했는데요.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도 고려하고 있는데, 비용 및 관리소홀로 인해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본 법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도입된 토양환경 평가제도로 오염여부확인 및 오염정도 확인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를 통해 양수자로서의 역할 및 의무를 다 하였는지는 평가제도와 연계해 판단하게 됩니다. 오염원인자의 정화가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지하에 발견되지 않는 오염의 경우 적절시기에 오염의 발견을 미비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고, 오염원인자들이 경제적 비용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그 비용으로 오염토양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 토양오염공제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을 토양환경우려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별로 토양환경우려기준이 일한다 하더라도 인체가 신체에 미치는 우려가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기준을 좀 더 현실화 시키고,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정화기준을 달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해성평가를 통해서 정화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 정화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부지내 정화 및 부지내 정화불가능한 경우 반출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현재 관련 시설이 약 120개 중 20여 개만 반입정화 업체로 현실적 활용이 미약합니다. 정화업자 입장에서 단지조성을 통해 분양, 임대 등으로 정화시설을 계속적으로 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변화가 필요합니다. 4대강 오염토 등의 경우 관련 반입정화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토양 보전 대책 지역지정제도 도입이후 지정사례가 없는 것은 규체 이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확대를 위한 검토를 해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현재까지는 반출정화를 제한했지만, 여건 변화 후 도시재개발 후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오염토의 경우 만약 정화가 필요하다면 시설이 확충된 경우 이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확대를 위해 검토해보니 주민반대가 크고, 주민에 대한 건강관련 조사 등은 있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양환경기본법 정의상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 저장하는 방법은, 오염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구체화시켜 사전혼란을 방지를 하자는 토양오염 관리시설의 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부분이고 현재 문화시설 관련 규칙은, 무과실책임원칙에 따른 오염원인자의 범위 지정을 구체화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을 유지를 하되 하위법령을 지침형태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제정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보조금 및 부담금, 또는 오염물질 생산 유통자에 대한 보증금에 관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듯싶습니다. 현재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절차상, 시장, 구청장 요청에 의해서 시설이 지정되는데, 이 사항의 경우 절차를 보완해 효율적, 합리적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농지들이 많은데 농산물 판매에 대한 피해를 호소가 예상될 경우, 그와 관련된 요청을 사전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걸쳐서 국가에서 실행을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환경부 업무 관련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현숙

그 다음은 토양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던 박은진 박사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박은진

토양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사무관님께서 토양에 관한 쟁점사항을 정리를 해주셔서 잘 알겠구요. 저는 토양의 생태 환경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번 법개정과 관련해 연구랑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표토 관련 보호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지만 생태적으로 건강한 토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생물학적 과정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유기적 토양 단위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토양이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토는 다 피복이 되어야지 보호가 되고 표토가 유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도시지역, 공사장 및 농지의 경우 표토의 노출 상황을 보고 토지이용별로 어떻게 토양이 사용되고 보존되는지는 연구를 했었는데, 비정오염원은 수질오염측정에서, 비산먼지는 건설공사 관련되어 지칭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표토보호의 경우 공사와 관한 지침수준에서 정리되었는데, 토양자체의 건강성 측면에서는 다루지 않아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토양오염관련 전체적 연구는 KEI 황상일 박사님께 자문을 하시는 게 더 낳을 듯 싶습니다.

차현숙

법개정 관련된 토양관련부분에 관한 연구를 참조해서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법경제학적 자문은 서울법대 허성욱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허성욱

서울법대 허성욱입니다. 잘 모르는 주제에 관해 연락을 받아서 좀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만, 두 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깐 흥미있는 쟁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자문이나 조언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구요. 조문과 관련해 타당성평가를 하는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토양의 보존과 가치들에 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실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현숙

이런 부분에 관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비용측정 등은 아이디어는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관련된 말씀은 추후 이영채 사무관님과 협의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채

저희들이 규제영향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교수님께 의뢰하고 그 부분이 토양의 가치적인 측면과 규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비용과 대비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차현숙

비용편익의 경우 입법예고안의 평가결과에 관한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방향설정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허성욱

신규제 또는 규제강화와 비용편익 분석은 행해는 지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들여야 보면 숫자를 맞춰서 결론을 한쪽으

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지면 규제당부에 관한 소송도 있고, 이후 비용편익분석도 잘 되었는지 논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다양한 행정부처들이 유형별 생명의 가치 규제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지에 관한 세분화된 통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기준들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 작업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현숙

▪ 허성욱 교수님께 비용편익분석서를 보내드리고 별도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철

입법평가와 관련되어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생소하게 들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평가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과 토양환경개정안 사이에서 만들어진 체계적합성에 대한 비교로서 가능할 것 같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량적 평가가 숫자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숫자를 맞추는 비용편익분석이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비용편익분석과 확장편익분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표준비용모델 및 비용편익분석 속에 모든 것을 수치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범자와 법률집행자 사이에 집행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등이 듭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있어서 토양환경과 관련한 설문과 관련해서 지불가능한 내용 등을 통해서 적용하면 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법률집행자의 신고의무와 집행의무는 표준비용모델로 가능할 것 같고, 정화와 관련한 내용과 관

련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적 평가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 계량적 평가는 전제들에 관한 객관적 보조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자의 이해도 및 법정도 조사에서 설문조사 방법 및 사안 접근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면 연구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현숙

확장비용편익분석은,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의마하는 것이라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소은 박사님께 자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상운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운

차박사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고, 특정 입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한다고 할 때 규제입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하나로서 진행될지 기존에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넘어서 새로운 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양환경기본법에 전체를 다룰 것인지 개정안만 대상으로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분쟁 관련 특정의 환경에 대한 가치 추정 작업을 통해 이를 유형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기본법은 전체 대한민국의 국토를 대상으로 한 신체 및 인체에 관한 리스크에 대한 정화보전 등을 규정한 것인데, 환경과 관련된 분쟁을 전제로 한 DB 자체가 하나의 입법에 적용될 수 있는 궁금증이 있구요. 그것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관련 연구자의 통계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CVM 등은 사례적용의 모델링이지 특정법 전반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유형화에 따른 가치추정방법이

정립되지 않고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고 BC 분석의 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토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입법평가를 통해 확인할 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히 하기위해 환경의 유형에 따라 유형화된 방법론을 적용하고, 그 관련 연관성을 찾아 연결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주된 적용대상 지역인 토양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연구성과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가치들의 추정이란 개념 하에, 토양의 유형에 따른 입법평가로 정립할 때 케이스별로 도출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하게 되고 명확하게 드러내 줘야 가치 추정과 관련된 유형화별 방법론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유형화된 토지자체를 적용해서 일반원칙을 찾을 수 있다면 1년 연구를 통해 나올 아웃풋은 적요대상 지역에 관한 입법평가로서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현숙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어떻게 과제에 녹여낼 것인지가 연구의 과제라 생각되며,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한상운 박사님께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한상운

토양환경보전기본법 전체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가지고 이를 유형별로 세워서 정립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양관련 아이디어는 법학자 및 다양한 실무자 집단을 통해 기술적 자문을 얻어서 대상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방법론 쪽은 허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됩

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소은 박사의 DB와 연계된다면, 아웃풋이 나오면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현숙

이번 과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한상운 박사님께서 그 부분 관련해 절반은 도와주실꺼라 믿습니다. 다음은 최성록 박사님의 자문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록

늦은 점 양해를 구하구요. 의견은 대략적으로 문서로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미 소개가 된 것 같구요. 저는 사실 토양환경법 관련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가치평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제공 드렸던 마지막 페이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연구계획 자체가 한상운 박사님의 말씀처럼 연구계획상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구요. 사례 연구의 경우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토양법상의 주요 공익적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양법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정리한 상황인데, 자료에 포함시켰듯이 몇 가지 정리하고 있는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문신뢰도의 경우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비시장가치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에 관한 명확한 목적과 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환경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양환경에 관한 일회 연구를 통해서 전체 토양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라 생각되구요.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은 조건부가치평가법이맞구요. 하지만 공적편익이나 상태의 개선만 이뤄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조합된다면, 초이스모델링이 더 적합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현숙 박사

님과 통화를 했지만, 표본의 크기와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련지역 표본만 볼 수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에서는 연구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조건부가치평가나 초이스모델링에 관해서는 연구기관에 관한 추가고려도 필요할 것도 같구요. 한상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은 최근 복원에 관한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습지가 복원될 경우 아니면 또는 대체할 경우 어떤 정도로 복원화해야 할지에 관해 비시장가치의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는 편익이전기법을 사용했는데, 비록 유형화가 필요없느냐가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유형화를 연구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 또한 문제인데, 법적 적용은 가능하지만 핵심은 비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언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교통부 차원에서 비시장가치를 반영하는 특정 메뉴얼이 있는데, 보상시 슈퍼펀드의 경우처럼 기존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환경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가치의 반영은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법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심과 적용할 의지를 갖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실효성의 문제이지 방법론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안된 연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를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어떤 사례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복원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문제 등, 사람들이 느끼는 개선 가치 또는 피해약과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후에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차현숙

그러면 원내 자문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원

법제연구원 박종원입니다. 일단 당초에 나왔을 때보다는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큰 제목 그때에 환경법에 대한 입법평가 모델정립을 이야기 하면서, 왜 토양환경보전법을 선택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토양환경을 이루는 토지는 사적소유의 대상이므로 환경재에서 말하는 대지, 수질, 자연환경 등과는 구분되는 대상입니다. 토양환경법의 경우 오염원인자를 처벌하는데서 아주 엄격한 토양환경보전법을 정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이미 대상으로 결정된 듯 싶으니, 이를 놓아두고 일단은 범위를 축소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또는 새만금 판결 과정에서 비용편익 자료 등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듯 싶습니다. 입법평가에서 도입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은 깨끗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겠단 법인데, 문제는 발생 전의 오염문제에 대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래에 관한 피해를 산정키 어렵기 때문에 가치를 추정한다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런 토양환경보전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구요. 특히 전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해 계량적 평가에 초점을 두는 점에 걱정스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 관한 것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준서

입법평가가 과도기적 측면이 있어서 부담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만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입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관리 및 보전 전반에 다룰 것이냐 양수양도를 통한 오염토양의 책임관계를 다룰 것인지, 사적

소유권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지 등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나 수범율을 평가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 한다면 정성적 평가 및 계량적 평가를 놓고 볼 때 비용편익분석이나 규제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건부가평가법을 통해 비시장가치를 유형화하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현준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대개 어려운 얘기들이 오가서 급격하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환경법 영역에서 입법평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모델을 세운다면 큰 업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델정립의 관점에서 토양환경기본법이 적합한가를 놓고 보는데,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생물자연보호나 하는 이런 차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권의 침해와 위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대기수질토양은 자연보호나 습지보호나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시작한 후에 토양보호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들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차현숙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하고 다녀가신 분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신 듯 싶어서, 자문의견을 듣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제 관련해 짧은 종합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철

토양환경보전법을 가지고 환경 관련 입법평가 적합성여부에 관해서 법률자체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되고 있는데, 이를 지금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구요. 전체를 볼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전체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모든 툴을 사용해서 불가능할 것 같고, 개정안을 중심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개선안들이 만들어졌으므로 개정안이 기존법과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구별하면 될 것 같고, 조건부가치평가법이 논란인데, 법률조문의 효과에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예상되는 기타 다른 표준비용모델 등을 골라내서 각각의 개량적인 툴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윤광진

센터 내에서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에 관한 입법평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란 듭니다. 저희가 초기 연구와는 좀 더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목적이라든지 대상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니깐, 추상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인지 비용인지, 설문조사인지, 정성평가로 다뤄야 할 사항이지, 계량분석이 중심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진

저는 얘기 드는 과정에서 연구에 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의 목적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은 오염원으로서의 토양을 보던 관점에서 자원으로서의 토양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요. 생존자원, 탄소저장가치로서의 토양 등을 중

요하게 보는 시각이 있네요. 목적이나 방향을 정확히 전환한 것 같은데요. 표토보존을 담고 있고, 표토침식조사도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수질오염의 측면에서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개량화되는 비시장가치를 다룬다면 이런 부분도 다뤄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록

전반적으로 연구계획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앞부분에서 다른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대상을 정립하는데서 연구를 잡았으면 하구요. 토양환경보전법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논의의 메인 포인트는 토지소유 제한 즉 토양환경보전법상 유해물질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에 관한 제재할 권한이 있구요. 최근 미군기지 모델의 경우 캠프 경우 정화비용인 몇 억에서 몇십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처리비용을 받고서 이전 받는게 맞았거든요. 환경가치의 훼손정도와 훼손범위를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관한 복원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책임이 된거죠. 습지자연환경의 경우 직접피해는 평가 가능하지만 간접피해의 경우 미리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 생각됩니다. 환경가치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권과 습지자연환경보존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토양에 관한 가치보전보다는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고 기존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정책적인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것이고 특히 수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어떤 방법론적인 틀을 잡아오려는 시도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최성록

토지재산권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토지재산권의 영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차원에서 계량평가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입법평가를 하는 최종목적은 환경법을 통해서 그 입법평가의 모델정립과 관련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주제의 대상으로 잡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현숙

말씀 감사드리고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진행시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윤석진

저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현재로서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이 축소되어야 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들이 구체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계형

연구책임자는 이 과제는 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투입되어서 하기로 한 과제이기 때문에, 4년차 입법평가 모델을 정립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 모델로 삼은 법이 환경법이었고 토양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해낸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태

귀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연구의 목적경위가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깐 빗나가기도 하고 스쳐지나가기도 하고, 포커스가 이동하면서 논의들이 혼란스러워졌는데, 차박사님이 많이 해오셨던 설문조사도 토양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돌려보고 대상을 줄여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활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의 발단은 한상운 박사님이십니다. 원내에 계신 박사님들도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지만 한박사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CVM 같은 경우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현숙

질문이나 서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은 얘기는 식사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궁금한 점들을 자문을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